

定 款

세아제강지주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SeAH Steel Holdings Corporation (약호 SSH)라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회사업

- (1) 광업
- (2) 제조업
- (3) 가공업
- (4) 수출입 무역업
- (5) 투자업
- (6)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 (7) 건설업
- (8) 도·소매업
- (9) 숙박 및 음식점업
- (10) 운수업
- (11) 통신업
-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3) 사업서비스업
- (14) 교육서비스업
- (1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6)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1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기타 광고사업
3.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4.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5.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6. 벤처캐피탈업 등 신기술사업 관련 투자관리·운영사업
7. 창업 관련 투자, 정보 및 서비스제공, 알선 등 창업지원사업
8. 팩토링업
9. 브랜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10.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 개발 또는 판매,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 구축 또는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11. 계열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12. 강판, 강판, 강재, 기계, 전기기기, 공구, 산소 및 화학약품 등의 제조매매
13. 강판, 강판, 강재, 광물, 기계, 공구 및 제 건축자재 등의 가공매매
14. 수출입 무역업
15. 광산업
16.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을파상)
1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8. 주택건설 사업
19. 도시가스 사업
20. 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21.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제 3 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ahsteel.co.kr/company/holdings>)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식

제 5 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2,000,000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6 조(주식의 종류와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7 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1,200,000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3%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식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3.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에 따라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작계약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외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기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의 2(삭제)

제 9 조(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시가발행)

- ①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발행가액 및 조건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관계 법령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

및 주식의 종류는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이 경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 및 주식의 종류는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이 경우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6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7조(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소집권자와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 ③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0 조(소집통지)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조선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1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제 22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23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이 회사 소정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은 이 회사의 주주이어야 한다.

제 24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6 조(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의장은 자기의결권행사에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제 27 조(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 28 조(임원)

- ① 이 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며 감사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집중투표의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의 2(비등기임원)

- ① 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임원을 둔다.
- ② 비등기임원의 임명 및 업무분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비등기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9 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시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0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1 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제 32 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감사의 직무 및 감사록)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자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자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⑧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4 조(지배인, 고문 및 상담역)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배인, 고문 또는 상담역을 둘 수 있다.

제 35 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제 35 조의 2(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감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상의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임원의 보수)

- ① 임원보수의 총액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하고 그 배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임원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7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 38 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9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상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의장이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40 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2(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계 산

제 41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각 서류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이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이 회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44 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회사가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고,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45 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2014. 3. 21.)

1.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정관 28조의 2(비등기임원)의 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 다른 규정상의 '집행임원'도 '비등기임원'으로 본다.

부 칙(2018. 9. 1)

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2)

이 정관은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